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및 결격사유 신설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2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신설	2
2.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4
3. 개정안 부칙	13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9.

3. 회부연월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8조¹⁾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신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 발의 이후인 2026년 5월 19일 법률 제21655호가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제18조제3항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종전 제3항이 제4항으로 이동될 예정임.

따라서 개정안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과 시행 예정인 제18조제3항을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 및 당연면직·해촉에 관한 조문의 항 번호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18조제3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령 제12조제1항²⁾ 및 제15조제1항³⁾에 따르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 구성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성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 법 제26조제2항 각 호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신 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나. 검토의견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분쟁 조정 등에 참여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격한 사람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4항제2호에서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전체(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결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자격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⁵⁾에 따른 최소침해의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⁶⁾에 따른 최소성·관련성·제도 간 균형 등을

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6)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개정안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7)에서는 각 사안별로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교육활동 침해조치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보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 경미한 조치와 중대한 조치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차등적인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

(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2.11.24., 2020 헌마1181)을 하였고, 최근 해당 조문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개정하는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결정 요지, 2020헌마1181, 2022. 11. 24】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 둘째,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를 실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범죄경력 및 교육활동 침해조치 이력에 대한 자료조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음.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관련된 범죄경력 등의 정보와 교육활동 침해조치 이력을 각각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조치 이력은 현재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조치 이력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유기관 및 조회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⁸⁾을 고려하면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권한과 대상기관,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법률에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와 자료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두고 있음.

[유사 입법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을 교육활동 관련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의안 번호 (대표발의)	법안명	주요 내용	회부일
2217619 (백승아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u>학교운영위원회</u> 위원이 될 수 <u>없도록</u> 결격사유에 포함,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26.3.20.
2217620 (백승아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u>유치원운영위원회</u> 위원이 될 수 <u>없도록</u> 결격사유에 포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교육부: 일부수용>

-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결격사유별로 제한 기간을 둔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 및 기한 없는 결격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결격사유의 검증을 위해서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인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법적 권한이 필요하므로, 이를 명시하는 보완 규정이 요구됨
- 아울러,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이력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타교육청의 조치 이력에 관한 정보 조회 권한에 관한 보완 규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도교육청>

- 인천교육청 : 신중검토
 -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있으며, 운영상 한계가 있음
 -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보 보유기관 조회 범위·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분쟁의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시스템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충북교육청 : 일부수정
 -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경기교육청 : 신중검토
 -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결격사유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나 관계 기관의 조회 범위를 벗어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이 보호자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라는 점⁹⁾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조치 근거 및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 교육 활동 침해조치 이력의 조회체계 마련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 6788-5192

참고 1**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현황****① 각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25.10.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0	14	10	14	11	12	15	11	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균
11	13	12	12	10	20	16	15	12.8

자료: 교육부

②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평균 위원 수('25.10.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3	17.2	34.2	42.6	31.5	41	40.5	28	26.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균
21	18.5	17.1	22.5	16.6	18.2	16.9	39	22.5

자료: 교육부

참고 2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자격, 임기, 제척 및 해촉사유 등

구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제18조제3항) ※ 2026.11.20. 시행 예정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위원자격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 해당 시·도의원 - 해당 시·도교육청 교원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 학생 생활지도 경력 15년 이상 교원 - 조교수 이상 또는 상당 전문가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유경험 학부모 - 변호사 - 해당 시·도 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 - 조교수 이상 또는 상당 전문가 -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부모 - 변호사 -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기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3년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함, 1회 연임 가능	2년, 1회 연임 가능
제척·기피 및 회피 (제13조)	<심의안건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인 경우>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안건이 교육활동 침해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인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준용 (제16조제1항)
해촉 (제14조)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해촉사유 준용 (제16조제2항)

구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하지 않은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